# 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양식

<table>
<tr><th colspan="10">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공기관 명</td><td colspan="8">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・외국인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기관</td><td colspan="2">한국정보기술단(주)</td><td>평가기간</td><td colspan="2">2024.9.23<br>~<br>2024.11.01</td><td>평가예산</td><td colspan="2">☐ 1천만원 미만<br>☐ 1천만원 이상~3천만원 미만<br>■ 3천만원 이상~5천만원 미만<br>☐ 5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<br>☐ 1억원 이상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평가대상시스템 개요</td><td>시스템명</td><td colspan="4">전자여행허가(ETA) 시스템 고도화</td><td colspan="2">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</td><td colspan="2">-</td></tr>
<tr><td>추진개요 및 목적</td><td colspan="8">▪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단체 외국인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 신청 불편을 해소하고 단체 여행객 일괄 신청 서비스 도입을 통해 방한 외국인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‘전자여행허가(ETA) 시스템 고도화’<br>▪ 단체여행 입국자에 신속하고 편리한 입국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괄 신청 체계 도입을 통한 전자여행허가 서비스 플랫폼 고도화<br>▪ 입국하는 단체 외국인은 입국심사대에서 신속한 수속을 제공하여, 단체 외국인 여행자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한 관광 활성화 지원체제 구축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추진성격</td><td>대상여부</td><td colspan="3">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<br>(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)</td><td>추진예산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₩43,905,000<br>(VAT 포함)</td></tr>
<tr><td>추진주체</td><td colspan="3">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・<br>외국인청 정보관리과</td></tr>
<tr><td>추진근거</td><td colspan="3">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(사전여행허가), 제12조(입국심사)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0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)</td><td>추진유형</td><td colspan="2">☐ 신규 구축<br>■ 변경(고도화)<br>☐ 운영</td></tr>
<tr><td>신기술 유형</td><td colspan="7">-</td></tr>
<tr><td>주요내용</td><td colspan="8">▪ 단체 일괄신청 서비스 확대 등 전자여행허가(K-ETA) 고도화<br>▪ 전자여행허가(K-ETA) 심사 업무처리 응용프로그램 고도화<br>▪ 연계 고도화<br>▪ 입국신고 체계 일원화를 위한 전자입국신고서 구축<br>▪ K-ETA 허가자에 대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제공</td></tr>
<tr><td>운용체계 변경내용 (변경인 경우)</td><td colspan="8">-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개인정보파일개요</td><td>파일명</td><td>정보주체 수</td><td>개인정보 항목</td><td>제3자 제공<br>(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근거, 제공하는 자, 제공목적, 제공하는 항목 작성)</td><td>개인정보 처리 목적</td></tr>
<tr><td>홈페이지/모바일 가입 회원</td><td>-</td><td>이메일, 비밀번호, 국적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여권번호, 여권만료일자</td><td>제공받는자<br>-<br>근거<br>-<br>개인정보의 범위<br>-</td><td>홈페이지/모바일 가입회원 관리</td></tr>
<tr><td>전자여행허가 신청자 정보</td><td>-</td><td>[필수] 안면사진, 이메일, 국적, 성별, 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여권만료일, 복수국적 정보, 휴대전화번호, 과거 한국 방문 경험 여부, 입국목적 및 여행사 정보, 체류지 정보, 직업, 질환정보, 범죄경력 정보<br>[선택] 여권 인적면 사진, 체류기간</td><td>제공받는자<br>-<br>근거<br>-<br>개인정보의 범위<br>-</td><td>전자여행허가 신청 및 심사</td></tr>
<tr><td>전자입국신고자 정보</td><td>-</td><td>[필수] 이메일, 국적, 성별, 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여권만료일자, 체류지정보, 입국목적, 입국일자, 입국편명, 출항일자, 여권 인적면 사진<br>[선택] 출항편명, 비자정보</td><td>제공받는자<br>-<br>근거<br>-<br>개인정보의 범위<br>-</td><td>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심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2">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</td><td colspan="4">1. 개인정보 수집, 보유・이용, 제공, 위탁, 파기 등 Life Cycle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[ 전자여행허가(ETA) ]<br><br>〈회원가입 업무〉<br>[수집]<br>1. 수집경로: 온라인<br>2. 수집대상: 전자여행허가 신청자<br>3. 수집주기: 수시</td></tr>
</table>

| | |
|---|---|
| | 4. 수집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출입국관리법 제12조<br>5. 수집항목:<br>- 이메일, **비밀번호**, 국적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**여권번호**, 여권만료일자<br><br>[보유・이용]<br>1. 전자여행허가 신청자 정보<br><br>[제공]<br>- 없음<br><br>[파기]<br>- 준영구<br><br><전자여행허가 신청 업무><br>[수집]<br>1. 수집경로: 온라인<br>2. 수집대상: 전자여행허가 신청자<br>3. 수집주기: 수시<br>4. 수집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, 출입국관리법 제12조<br>5. 수집항목: [필수] 안면사진, 이메일, 국적, 성별, 성명, 생년월일, **여권번호**,<br>여권만료일, 복수국적 정보, 휴대전화번호, 과거 한국 방문 경험 여부, 입국목적 및 여행사 정보, 체류지 정보, 직업, 질환정보, 범죄경력 정보<br>[선택] 여권 인적면 사진, 체류기간<br><br>[보유・이용]<br>1. 전자여행허가 신청 및 심사<br><br>[제공]<br>- 없음<br><br>[파기]<br>- 준영구<br><br><전자입국신고 업무><br>[ 수집 ]<br>1. 수집경로: 온라인<br>2. 수집대상: 전자입국신고 신고자<br>3. 수집주기: 수시<br>4. 수집근거: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<br>5. 수집항목: [필수] 이메일, 국적, 성별, 성명, 생년월일, 여권번호, 여권만료일자,<br>체류지정보, 입국목적, 입국일자, 입국편명, 출항일자, 여권 인적면 사진<br>[선택] 출항편명, 비자정보 |

[보유・이용]

1. 전자입국신고 신고 및 심사

[제공]

-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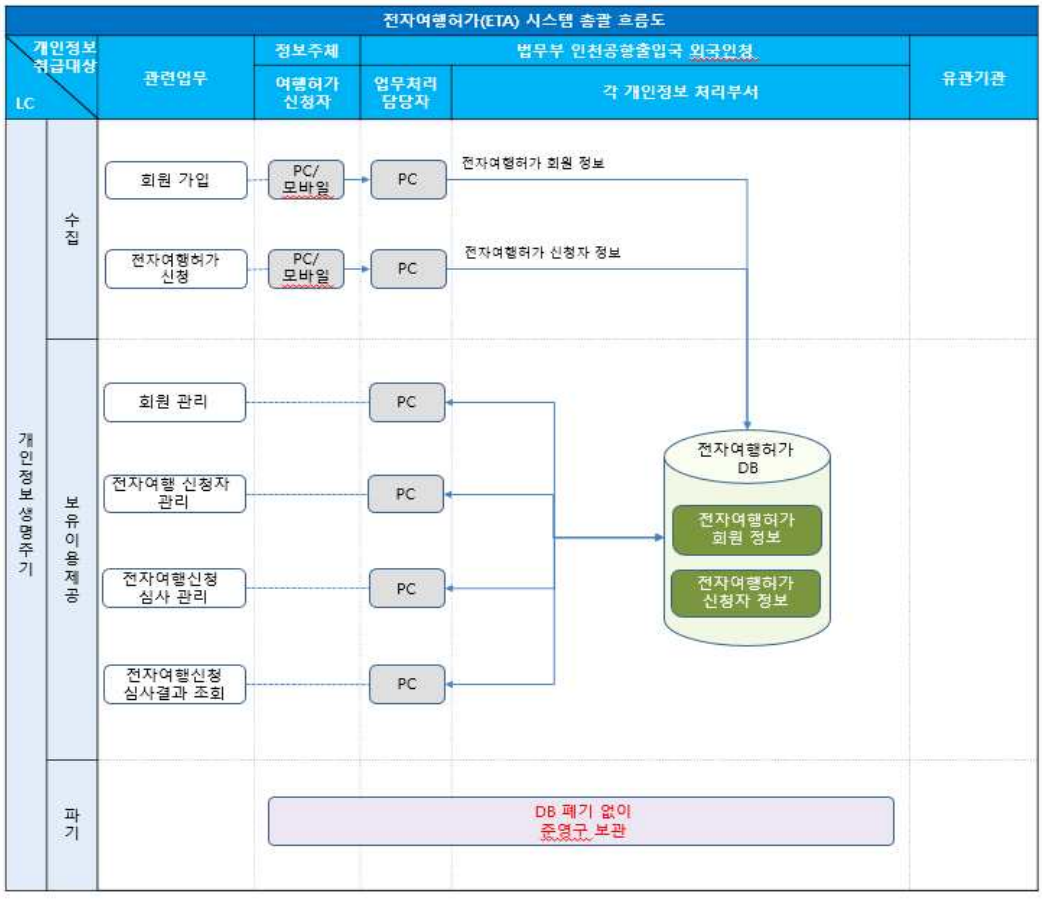
[파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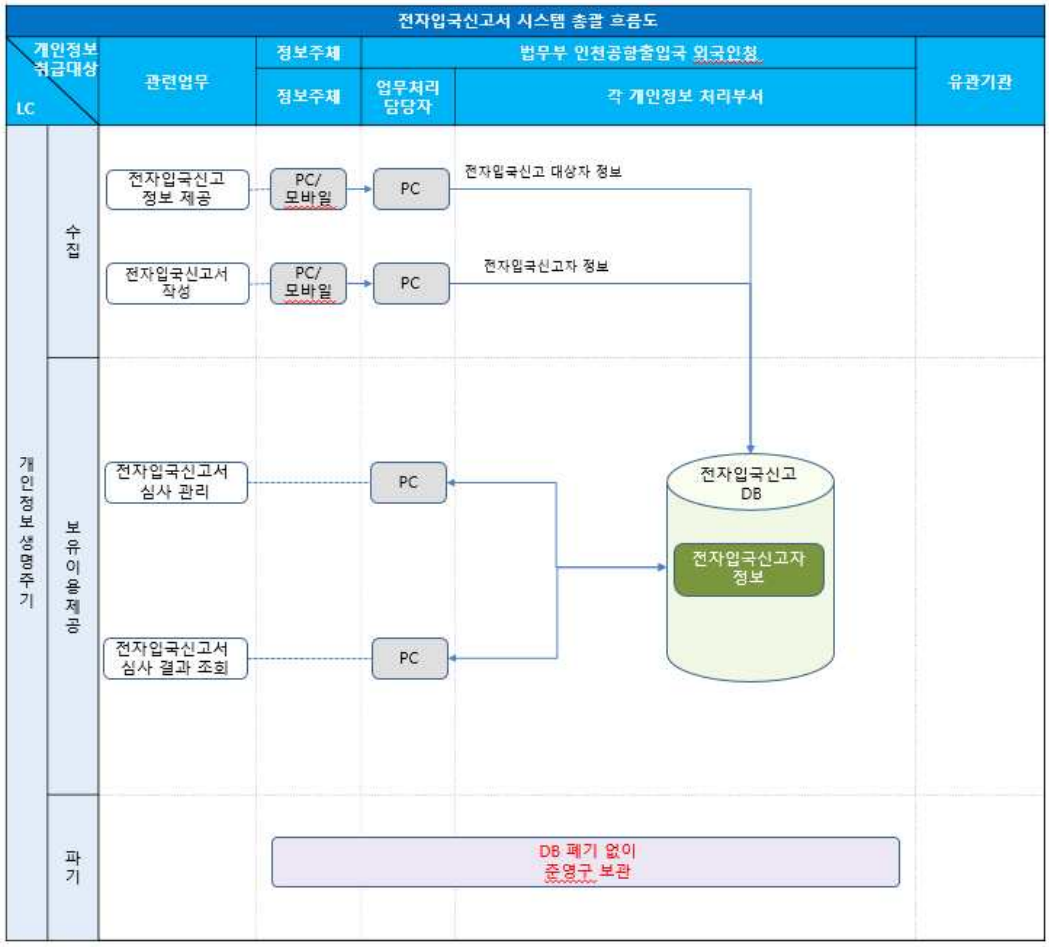
- 준영구

2.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

2.1 전자여행허가(ETA) 업무

○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도



<table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2.2 전자입국신고 업무<br>○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 흐름도<br>
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영향평가기준</td><td>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</td><td>1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: 항목추가(1항목)<br>1.1 추가항목: 3.3.8 제3자에게서 제공받을 시 정보주체에게 통지<br>1.2 추가사유: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변경 반영<br>2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: 항목추가(1항목)<br>2.1 추가항목: 4.4.1.1)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해당 사유를 관리<br>2.2 추가사유: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변경 반영<br>3. 특정IT 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: 항목 제외 전체(30항목)<br>3.1 제외사유: 해당 사항 없음</td></tr>
<tr><td>주요 평가기준</td><td>-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(민감정보의 처리 제한)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)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(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)<br>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<br>-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(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)<br>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(개인정보의 암호화)<br>-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(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)</td></tr>
</table>

| | |
|---|---|
|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・평가 | 1.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분석평가<br><회원가입 업무>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회원가입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음<br>- 목적 내의 용도로 제3자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<br>-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.<br><br><전자여행허가 신청 업무>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출입국관리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전자여행허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음<br>- 목적 내의 용도로 제3자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<br>-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<br><br><전자입국신고 업무><br>-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,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3에 근거하여 전자여행허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음<br>- 목적 내의 용도로 제3자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<br>-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없음<br><br>2. 개인정보 처리,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기술적 조치 사항에 따른 분석평가<br>-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업무위탁 시 수탁사에 대하여 표준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으며, 수탁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,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·감독 활동을 이행하고 있음<br>- 정보주체가 비밀번호 변경 등 중요 정보 접근 시 비밀번호 재확인 등 추가적인 인증이 적용되어 있음<br><br>3.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위험요소<br>-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자로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할 수 있음<br>-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으로 안 될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가 안 될 위험성이 높아짐<br>- 개인정보파일 대장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보호조치를 적절히 적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음<br>-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 미접속 시 계정 잠금, 동시 접속 제한, 관리자 로그인 알림 기능 미구현 시 개인정보취급자 계정 도용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, 변조, 훼손될 위험이 증대함<br>- 장기 미접속 시 계정 잠금, 동시접속 제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정도용 사실을 조기에 파악할 수 없어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있음<br>- 키보드 해킹 방지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, 키보드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|

<table>
<tr><td rowspan="2">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</td><td>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</td><td>1.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<br>-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“2024년 바이오정보 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영향평가” 시 평가를 수행함으로 제외함<br><br>2.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<br>- 침해요인이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<br><br>3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<br>- 3.1.6) 정보주체의 선택정보에 대한 동의권이 제한될 수 있음<br>✓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부분 개선<br>- 3.1.7) 만 14세 미만 아동의 부적합한 동의권 행사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제한<br>✓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개선<br>- 3.1.8)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 위험<br>✓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 시 구분 동의 개선<br><br>4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<br>- 4.3.1) 중요 개인정보의 저장 시 암호화가 안 되어 유·노출시 내용 확인의 위험<br>✓ 중요 개인정보 저장시 암호화<br>- 4.3.4) 중요 개인정보 정보통신망 송·수신 시 암호화 미흡으로 유·노출 위험 존재<br>✓ 전송시 암호화 적용<br>- 4.8.1) 테스트 데이터를 통한 개인정보 유·노출 위험 존재<br>✓ 개발환경 통제<br>- 4.8.2)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안 미흡으로 유·노출 위험 존재<br>✓ 개인정보 처리화면 보호조치<br>- 4.8.3) 개인정보 출력 시 개인정보 유·노출 위험 존재<br>✓ 개인정보 출력시 보호대책 적용</td></tr>
<tr><td>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</td><td>1.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조치 하는 내용 및 정보주체가 알아야 할 사항<br>- 도출된 개인정보 침해요인에 대해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음<br>-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제한 및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·대응을 위해 방화벽, 웹 방화벽, 접근제어, 바이러스 백신, 웹 DRM, 웹 보안 등 보안장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가결과</td><td>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,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,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및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일부 개선이 필요함<br><br>1.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<br>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“2024년 바이오정보 전문분석시스템 고도화 개인정보 영향평가” 시 평가를 수행하기로 하여 제외함<br><br>2. 대상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<br>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·평가한</td></tr>
</table>

| | |
|---|---|
| | 결과,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는 침해요인이 도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없음<br><br>3.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<br>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· 평가한 결과, 5개 분야 26개 항목 중 3개 항목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식별되었으며 개선계획을 수립함<br><br>4.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<br>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 영역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분석·평가한 결과, 9개 분야 37개 항목 중 5개 항목에서 위험이 식별되었으며 개선계획을 수립함 |